

하도급거래시 피해 예방법

–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시 주의해야 할 10가지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그동안 중소기업(수급사업자)들이 대기업과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입증자료 불비 등으로 목적물을 완성하고도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해 10가지 단계별 조치사항을 제시했다.

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피해예방법을 게재하여, 하도급을 위주로 하고 있는 회원사의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

하도급 계약단계

1.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작업을 할 때는 그 구두지시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하여 근거를 남긴다.

※ 이 때 서면은 공문, 팩스, 이메일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같은 의미임

- 1-1 원사업자의 작업지시내용을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요구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작업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하여 작업지시 내용의 증거를 남긴다.

- 1-2. 원사업자의 작업지시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무조건 작업에 착수하지 말고 작업지시내용, 대금정산방법 및 시기, 단가 등을 서면으로

반복적으로 문의하여 작업착수 전에 최대한 구체화시키도록 한다.

- 1-3. 단가결정 등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나 지급조건에 대해서도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그 구두 약속사항을 기재하면서 좀 더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원사업자에게 서면을 발송한다.

- 1-4. 단가결정 등의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에 착수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원사업자의 작업지시내용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발송한다.

2.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하되, 받아들이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 발송하여 근거를 남긴다.

2-1. 위탁일과 위탁받은 목적물, 납품일,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이 구두협의사항과 일치하게 정확히 명기되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2-2. 원사업자가 불공정특약조항을 기본계약서에 첨부하자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 특약조항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용할 수 없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제시한다.

3. 발주자, 원사업자와 직접지급 합의를 하기 전에 수급사업자는 제3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 직접지급요건 성립 이전에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임

하도급 계약이행단계

4.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포기각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부당함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등 근거를 남긴다.

5.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 선급금,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조정을 해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청하는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하여 그 근거를 남긴다.

※ 원사업자가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6. 원사업자가 최초로 정한 하도급대금을 인하자고 요구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부당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남긴다.

6-1. 원사업자가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그 근거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되, 만일 근거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추후 확인 후 인하자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올해 발주량이 작년에 비해 30%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인하자고 할 경우, 증가추세를 확인한 이후에 하겠다고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제시함

6-2. 객관적 근거 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마지못해 응한다는 내용으로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7. 건설위탁에서 추가공사 범위와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작업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7-1. 서면으로 통지할 때 작업물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추가금액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분명히 밝혀 둔다.

7-2. 서면통지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작업일지에 원사업자의 작업지시 내용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작업일지를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음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9. 납품 후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을 때 하도급대금이 법정지급기일내에 최초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한다.

10. 자신과 거래한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다.㉠

납품단계(공사완공 후)

8. 원사업자가 자신의 재고물량 과다 등의 이유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작업완료에 따라 언제 납품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수령거부에 따른 재고비용 증가 등 경영

※ '납품한 날, 공사를 완공한 날 등' 을 의미하며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경과시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음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요 - 연리지

아름드리나무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저렇게 긴 세월 동안 마주 서 있으면 아무리 나무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정말 가까이 자라는 두 나무는 맞닿은 채 오랜 세월이 지나면 서로 합쳐져 한 나무가 되기도 한다.

두 나무의 나뭇가지가 서로 이어지면 연리지(連理枝), 두 나무의 줄기가 서로 이어지면 연리목(連理木)이라 하는데, 줄기가 이어진 연리목은 가끔 눈에 띄지만 가지가 붙은 연리지는 희귀하다. 가지는 다른 나무와 맞닿을 기회가 적고, 또 가지와 가지가 서로 맞닿는다고 해도 바람이 휘방을 놓기 때문이다.

한편 땅속뿌리의 연리 현상은 줄기나 가지보다 훨씬 흔하다고 한다. 몸통이 잘려진 나뭇등결이 몇 년이 지나도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옆의 나무와 뿌리가 연결되어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무와 나무가 서로 오래오래 몸을 맞닿으면 하나의 몸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가까이 자라는 두 나무의 줄기나 가지는 차츰 굽어지면서 서로 맞닿게 되고, 맞닿은 부분의 껍질이 압력을 견디지 못

해 맨살이 드러나면서 둘 사이에는 사랑의 스킨십이 이루어져 생물학적 결합을 이룬다.

먼저 지름 생장의 근원인 부름켜가 조금씩 이어지고 나면, 다음은 양분을 공급하는 유세포(柔細胞)가 서로 섞여 버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의 보통 세포들이 공동으로 살아갈 공간을 잡아간다. 그렇게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연리의 대장정, 즉 두 나무 세포의 이어짐은 적어도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두 나무가 아닌 한 나무가 되어 양분과 수분을 서로 주고받는 것은 물론이고, 한 쪽 나무를 잘라 버려도 광합성을 하는 다른 나무의 양분을 받아서 살아간다고 한다.

그런데 '연리'는 같은 종(種)의 나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데, 가끔은 같은 종의 나무가 아니면서도 서로 의좋게 붙어 있는 나무도 있다고 한다. 충남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 3리의 소나무와 상수리나무, 그리고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향소 1리의 옴나무와 느티나무 등이 그것이다.

사랑은 그렇게 둘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무는 온 몸으로 증명한다.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